

1. 개정이유

국가의 권한 및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내용으로 「중앙행정관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」(법률 제17007호, 2020. 2. 18. 공포, 2021. 1. 1. 시행)이 제정됨에 따라 지방관리 무역항(17개소), 연안항(18개소)에 대한 항만개발사업 시행 및 허가 등에 관한 권한 등 국가의 권한 및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조속히 이양하기 위하여 「항만법 시행규칙」을 정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공고대상 항만개발사업 등 정비(안 제6조)

「항만법」 제9조제7항, 「항만법시행령」 제16조 관련 공고 대상 항만개발사업의 공고와 관련된 사무를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“해양수산부장관”을 “관리청”으로 개정

나.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연장(안 제 9조)

「항만법」 제11조 관련 비관리청의 항만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연장과 관련된 사무를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“해양수산부장관”을 “관리청”으로 개정

다. 항만개발사업의 준공보고서 등 정비(안 제10조)

「항만법」 제12조 관련 비관리청의 항만개발사업 준공보고서의 첨부서류와 관련된 사무를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“국가”를 “국가 또

는 시·도”로 개정

라. 국가에 귀속된 항만시설의 무상사용 허가 정비(안 제16조)

「항만법」 제15조제3항, 제19조제3항 관련 귀속되는 비관리청의 항만 시설의 무상사용과 관련된 사무를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“국가”를 “국가 또는 시·도”로, “국가귀속·기부채납”을 “국가(시·도) 귀속·기부채납”으로 개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

라. 기 타 :

항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항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 본문 중 “해양수산부장관”을 “관리청”으로 한다.

제9조제1항제1호 중 “해양수산부장관”을 “관리청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1항제5호 중 “국가”를 “국가 또는 시·도”로 하고, 같은 항 제6호 중 “국가에”를 “국가 또는 시·도에”로 한다.

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국가에”를 “국가 또는 시·도에”로, “국가 귀속·기부채납”을 “국가(시·도) 귀속·기부채납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6조(공고 대상 항만개발사업 등) ① <u>해양수산부장관</u> 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영 제16조에 해당하는 항만개발사업을 매년 1월 말까지 공고해야 한다. 다만, 항만시설의 안전 확보 및 급격한 경제상황 변동 등으로 시급성이 요구되는 항만개발사업은 그 시기와 관계 없이 공고할 수 있다.		제6조(공고 대상 항만개발사업 등) ① <u>관리청</u> -----		

		-----.		

		-----.		
② ~ ⑤ (생략)		② ~ ⑤ (현행과 같음)		
제9조(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연장) ① 법 제11조 단서에서 “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.		제9조(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연장) ① -----		

		-----.		
1. 항만기본계획의 변경 또는 항만개발사업 여건의 변화 등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<u>해양수산부장관</u> 의 허가를 받은 자(이하 “비관리청”이라 한다)의 책임이 없는 사유		1. -----		

		----- <u>관리청</u> -----		

2. (생략)

② (생략)

제10조(항만개발사업의 준공보고서 등) ① 비관리청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의 준공확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항만개발사업 준공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.

1. ~ 4. (생략)

5. 총사업비 명세서(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시설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)

6. 하자보수 보증보험증권(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시설에 관한 부분만 해당하고,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률에 관하여는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70조 및 제72조를 준용한다)

② (생략)

2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0조(항만개발사업의 준공보고서 등) ① -----
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5. -----
----- 국가 또는
시·도-----

6. -----
----- 국
가 또는 시·도에 -----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6조(국가에 귀속된 항만시설의 무상사용 허가) 법 제15조제3항 또는 제19조제3항에 따라 <u>국가</u>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된 항만시설의 무상사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<u>국가 귀속·기부채납 항만시설의 무상사용 허가 신청서</u>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. 1. 2. (생략)	제16조(국가에 귀속된 항만시설의 무상사용 허가) ----- ----- <u>국가</u> <u>또는 시·도에</u> ----- ----- ----- <u>국가</u> <u>(시·도) 귀속·기부채납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2. (현행과 같음)
--	--